공동수급운영협약서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 건설공사)

2025. 03.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ροsco 포스코이앤씨



- 목 차 -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 협정서	3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규정	10
경리 및 회계처리규정	14
공사 하도급 및 자재관리규정	20
안전 및 노무관리규정	24
인사. 급여 및 취업규정	27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수급, 시공(공동이행방식)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 사 명 :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 건설공사

2. 공사금액 : 일금 오백팔십칠억이천팔백이십이만육천원정(₩58,728,226,000)

3.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2 조(공동수급체의 명칭 등)

- ①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평택고덕 광역 1B 도로(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이라 한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고, 출자비율은 공사금액의 증감 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 1.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 : 출자비율 75%
 - 2.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 출자비율 25%
 -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동수급체의 소재지는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로 한다.

다만, 본 공사 준공 이후에는 대표자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구성원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시에 발주자와의 본 공사 도급계약(이하 '본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본 도급계약의 이행완료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본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공동수급체의 존속기간도 위와 동일하다.

제 5 조(대표자의 권한 등)

- ①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3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대금청구 등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 ② 대표자는 이 협정서에 따른 대표자의 권한을 본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구성원의 책임)

- ① 구성원은 발주자 및 제 3 자에 대한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구성원 상호간에는 해당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되, 본 도급계약 등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이 협정서 등을 위배하거나 기타 고의·과실로 대외적인 책임을 야기한 구성원(소속 임·직원 포함, 이하 동일)이 있는 경우, 당해 구성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조(구성원의 비용분담)

구성원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포함)을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8 조(운영위원회)

- ① 공동수급체는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표는 [<mark>별표 1</mark>]와 같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각 구성원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 1 인을 운영위원으로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대표자의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그 운영위원이 소속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른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성원을 구속한다.
 - ⑥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⑦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시행규정에 의한다.

제 9 조(손익의 배분) 본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0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이 협정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임의탈퇴)

- ①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본 도급계약을 이행한다.
- ③ 제②항의 경우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고 이것을 잔존 구성원의 제 2 조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탈퇴 구성원에 대한 지분의 계산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지급은 본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제 9 조에 따른 손실 및 탈퇴로 다른 구성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 등을 공제한 후에 한다.
 - ⑤ 탈퇴 구성원에게는 결산상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2 조(강제탈퇴)

- ①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대표자(대표자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성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다.
- 1. 어느 구성원에게 지급불능, 부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어느 구성원이 그 자신에 대하여 워크아웃, 파산, 회생, 해산 또는 청산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제 3 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어느 구성원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등 그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경우
- 3. 어느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도급계약, 이 협정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른 탈퇴에 대비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구성원은 이 협정서 체결과 동시에 '공동수급체 지위탈퇴 및 시공권 등 포기각서', '일자 등 보충권 수여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양도금액 등 보충권 수여증서'를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대표자에게 제출한다.
- ③ 어느 구성원이 제①항에 따라 탈퇴되는 경우 탈퇴 당시까지 해당 구성원이 납부(출자)하지 않은 이 협정서에 따른 본 공사 관련 공사원가 등의 비용은 나머지 구성원이 자신의 조정된 출자비율(제 11 조 제③항)에 따라 부담한다.
- ④ 어느 구성원에게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변제할 자력이 없는 관계로 그 구성원이 이 협정서에 따른 본 공사 관련 공사원가 등의 비용을 납부(출자)하지 못하는 경우(회생채권 등의 면책, 권리변경 등으로 납부되지 않은 금액 포함), 해당 구성원이 탈퇴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제 11 조 제③항의 방식으로 조정된 출자비율에 따라 위 미납(미출자) 금액을 부담한다.
- ⑤ 제①항에 따른 탈퇴의 경우 제 11 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이후 본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공동수급체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구성원(어느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 ② 제①항의 하자담보책임은 대표자가 구성원과 사전 협의 후 이행하되, 사전 협의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②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먼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 후 관련 비용을 구성원에 청구한다.

제 14 조(공사 종사자 및 제 3 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① 공사 종사자 및 제 3 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어느 구성원만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 ③ 본 공사 준공 후 본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상금 청구소송 등 분쟁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가 소송업무 또는 합의업무 등 분쟁처리업무를 전담하고, 구성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배상금, 합의금 등 그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대표자는 분쟁발생사실을 사전에 구성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 15 조(비밀유지)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공사 도급계약 및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한 서류, 본 공사 수행 중인지한 사실 등을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입힌 구성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성원의임•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책임을 부담한다.

제 16 조(분쟁의 해결) 이 협정서와 관련하여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시행규정의 제정)

- ① 이 협정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속규정은 다음의 5 개 시행규정으로 한다.
 - 1.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규정
 - 2. 경리 및 회계처리 규정

3. 공사 하도급 및 자재관리 규정

4. 안전 및 노무관리 규정

5. 인사, 급여 및 취업 규정

② 제①항의 시행규정은 이 협정서의 일부분으로 하되, 이 협정서와

시행규정의 각 조항을 적용·해석함에 있어서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 협정서 내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③ 제①항의 시행규정은 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서에 한 구성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협정서 2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 년 04 월 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대표이사 전중선 (인)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주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로 240-3, 301 호

대표이사 채경석 (인)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8 조 및 제 17 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8 조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mark>별표 2</mark>]와 같이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운영위원의 유고시에는 해당 구성원의 대표이사가 대리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소장, 전문공종 하수급인, 구성원 소속의 전문가, 현장의 각 부서장 등 필요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구성원은 운영위원 또는 대리위원을 선임 또는 교체할 시에는 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접수함으로써 선임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결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 시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
 - 1. 본 공사의 기본방향

- 2. 본 공사의 실행예산
- 3. 본 도급계약 등 발주자와의 계약 관리, 이행 등
- 4. 본 공사 현장의 조직과 운영
-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시행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4 조(소집)

-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이 전체 의결권의 1/3 (의결권의 합이 1/3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의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개최시기,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이 불참할 경우 해당 운영위원 및 그가 소속된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출석 및 동의한 것으로 한다.
- ② 긴박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그사유를 설명하고 회의 개최일 전일에 제 1 항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결정으로 운영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결의를 할수 있고,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이 지정하는 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상)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운영위원 및 그가소속된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출석 및 동의한 것으로 한다.

포스코이앤씨

제 5 조(결의방법)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운영위원 전원의 의결권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의 출석과 출석한 운영위원의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권한의 위임)

본 공사의 공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에게 사전 통보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특정사항에 대한 결정 등 권한을 현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현장소장은 처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조(현장소장) 현장소장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공사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제 8 조(현장조직)

- ① 운영위원회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② 구성원의 직원은 팀장 또는 팀원으로서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소장의지휘, 통솔에 따른다. 또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은 그 직원이 소속된 구성원의해당 규정에 따른다.
- ③ 현장소장이 현장여건에 맞추어 구성원에게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현장조직상의 인원을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다.
 - ④ 구성원은 현장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되,

현장소장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경리 및 회계처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7 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의 경리, 회계, 출납, 세무 등(이하 '경리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경리 등 사무의 주관) 공동수급체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일체의 경리 등 업무는 대표자가 주관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처리한다.

제 3 조(회계기간) 회계기간은 공동수급체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1 개월간의 경리업무는 매월 1 일(공동수급체 성립시에는 그 성립일)에 시작하여 말일로 마감한다.

제 4 조(회계장부 및 보고서류)

- ① 공동수급체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모든 전표, 장부, 보고서, 회계운영시스템 등은 대표자가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 ② 지출과목 및 원가항목은 대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구성원은 회계, 세무감사 등 필요시 대표자의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
- ④ 공사원가 정산과 관련하여 구성원간 상호 제공한 공사원가 내역 및 기타 회계자료는 제 3 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 3 자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와 사전 협의 후 대표자를 통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 5조(선수금 및 기성금 청구)

- 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본 공사의 이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수령할 선수금, 기성금 등 모든 공사 수입금을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청구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은 발주자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는다. 구성원은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세금계산서, 각종 증빙서류 등)를 대표자가 요청한 기일까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대표자는 선수금 수령 후 15 일 이내에 각 구성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선수금을 지급한다.
- ③ 구성원이 공사원가 납부의무, 하도급 선급금 납부의무 등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 시행규정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구성원의 기성금 등을 대표자(또는 공동계좌(공동날인계좌)를 개설후 해당통장으로) 에게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기성금 등에서 해당 구성원이 미납한 금액(지연이자 포함)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미납업체는 탈퇴를 대비하여 대표사에 제출한 기본협약서 제 11 조,제 12 조에 정한 채권양도 계약서 및 통지서와 별개로 공사준공시까지 남은 공사비에 대하여 대표사와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후 이를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정산시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③항에 따라 지급함에 동의하고, 이와 같은 지급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6 조(공사투입원가의 청구)

- ① 매월 발생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제증빙은 대표자의 명의로 징구하여 기표하고, 대표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구성원에게 해당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공사원가를 공사원가 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 영수증으로 구분 발행하여 청구한다.
- ② 대표자는 공사원가 집행원장을 첨부하여 제①항의 청구를 그 익월 10 일까지 하기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 결산시 등 제세금 신고 및 납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표자의 제②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구성원은 본 공사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청구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25 일까지 현금 청구분은 현금으로, 어음 청구분은 어음으로 대표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④ 본 공사와 관련된 집행증빙은 대표자가 보관하고, 구성원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에 응한다.

제 7 조(구성원이 지원한 공사비의 처리)

- ①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각 구성원(대표사 제외)이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집행한 제 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로 이체하고, 사전 예상금액을 실행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 ② 재고자산의 전도는 장부상 금액의 전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은 동일 상태의 시중 구매가보다 저렴해야 한다.(재고자산 전도시에는 해당 명세서 첨부)
 - ③ 구성원 소속 직원 인건비의 전도
- 1. 각 구성원의 지급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에 의하여 전도하며, 월중 전입 및 전출시는 일할 계산토록 한다.

- 2. 인건비는 급여, 현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연월차수당,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급여성 비용을 말한다.
- ④ 고정자산의 사용료 전도는 사용료를 각 구성원 고정자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전도하되 그 사용료는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⑤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수수료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한다.
- ⑥ 각 구성원이 지원한 매월의 공사원가 내역은 그 익월 5 일까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현장 운영경비(전도금))

- ① 대표자는 최초 현장 운영경비 항목 및 규모를 대표자 내부기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각 구성원은 해당 금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 ② 대표자는 매월의 현장 운영자금을 매월의 공사원가 투입금액과 같이 익월 10 일까지 청구하고 구성원은 그 청구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25 일까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공사원가 제외)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 시행규정에서 정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구성원 각자 부담한다.

- 1. 파견인원 등의 부임여비, 구성원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구입한 비품
- 2. 공동수급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구성원의 관리부문 경비(구성원 일반관리비및 금융비용)

- 3. 국채, 공채 등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매입하는 각종 유가증권
- 4. 구성원 소속 직원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5. 공사소요 자금에 대한 소요(이자)비용
- 6. 각 구성원 본사 일반관리비
- 7. 각종 이행보증수수료

(입찰보증, 선급금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등)

- 8. 각 구성원 직원의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료
-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 10 조(자금의 집행)

- ① 공동수급체의 자금의 집행은 대표자가 대표자의 자금지불 기준에 의한다.
- ② 대표자가 어음으로 자금을 집행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가 집행한 어음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어음을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 시행규정상 정해진 기일까지 대표자가 청구한 자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 ① 각 구성원이 투입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현물출자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공사원가 처리한다.
- ② 고정자산은 대표자 명의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M6조를 준용한다. OOSCO

포스코이앤씨

제 12 조(세무신고 및 납부)

- ① 구성원은 세무상 신고를 요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맞게 하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구성원 소속의 직원 이외에 대표자(현장소장 포함)가 채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는 대표자가 일괄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 ③ 제세공과금 중 대표자가 일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 신고 및 납부 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대표자의 일괄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각자 신고 및 납부를 한다.
 - ④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각 구성원이 한다.
- ⑤ 본 공사 중 또는 종료 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구성원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불성실한 세무신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구성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경리분과위원회)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 연계되는 경리업무는 물론 현장의 경리업무일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리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경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기준에 따른다.

[공사 하도급 및 자재관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7 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관리 및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관리 등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행예산) ① 본 공사수행을 위한 실행예산은 대표자가 작성하여 각 구성원이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② 실행예산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및 각 시행규정에서 정한 비용, 구성원의 본사 일반관리비, 공사소요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제외한다.
- ③ 정산 결과 공사원가가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3 조(계약의 체결)

- ①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장설명은 본 공사 현장 또는 대표자의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견적 접수 및 입찰, 계약(변경계약 포함)의 체결은 대표자가 대표자 명의로 하고, 구성원의 동의는 하도급 계약 동의서(<mark>별표 5</mark>)로 이를 갈음한다.
- ② 대표자는 하도급 계약(변경계약 포함) 내용을 발주자 및 각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 ② 계약서의 양식 및 계약체결 관련 규정은 대표자의 내부규정에 의한다.

③ 하도급계약에 필요한 인지대 등 각종 비용은 대표자가 선 집행 후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4 조(경쟁입찰)

- ① 대표자는 입찰참여가능 업체수를 결정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대표자에게 하도급업체를 추천하고, 대표자는 대표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업체의 시공능력, 실적, 재무상태, 신용도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한다.
 - ② 최종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은 대표자가 대표자의 내부기준에 의한다.

제 5 조(수의계약) 시공특성상 또는 현장운영상 등 대표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시방서, 특허, 신기술 지정 등)에는 대표자는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에게 통보 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 6 조(긴급을 요하는 공사 등)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필요한 때, 3 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전 시공을 한 후 구성원에게 통보를 하고, 해당 비용은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7 조(기성검사 및 자금집행)

- ① 하도급 기성검사는 현장에서, 대금지급은 대표자의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하도급 계약변경 및 정산금액의 확정은 대표사가 수행한다.
 - ② 하도급 관련 각종 정산서류의 작성은 현장에서 한다.

③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표자가 한다.

제 8 조(공사현황 보고) 월간 공사 현황은 대표자가 작성 및 보관하고, 구성원이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 9 조(공사기록의 유지) 현장소장은 현장의 각 담당자가 맡은 수행업무에 관한 제반기록을 철저히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의 중지) 천재지변, 민원, 발주자 사정 등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그 중지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11 조(공사원가의 관리) 대표자는 대표자의 회계관리기준에 따른 공사원가관리 시스템에 따라 공사원가를 관리한다.

제 12 조(자재 등 구입) 자재업체 선정 및 구입은 대표자가 행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 등) 대표자는 구성원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하도급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은 구성원이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구성원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은하도급계약 동의서(<mark>별표 5</mark>)로 갈음한다.

제 14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 이전에 이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 집행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안전 및 노무관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7 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본 공사의 무재해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안전작업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의 책임감 부여와 사고발생시 책임의 명확화, 신속한 대처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공사 현장의 모든 종사자, 근로자,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현장방문객, 현장출입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안전관리) 제 2 조의 모든 인원은 대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등 산업사고 및 재해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조(산업재해 처리업무 및 재해율 산출)

-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정산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2 별표 4)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처리업무를 담당할 구성원과 재해율 산출은 아래기준에 의한다.
- 1. 산재처리 : 재해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순번표(<mark>별표 4</mark>)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윤번제로 처리한다.
 - 2. 재해율 산출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 ② 구성원은 각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신고한다(보험료 각자 부담).

- ②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 등의 업무는 안전관리순번표(<mark>별표</mark> 4)에 의한다.
- ④ 본 공사 중 법정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현장에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처리비용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⑤ 산업재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 및 각종 발생비용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5 조(근로자재해보험)

- ① 구성원 소속의 직원의 산업재해시는 해당 구성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 ② 제①항 이외의 근로자의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③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료 납부(가입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행하고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 ④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명의로 근로자재해보험(1 인당 2 억원, 1 사고당 2 억원)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보험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및 해당 하도급업체로 한다.
- ⑤ 근로자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모든 하도급업체로 한다.

제 6 조(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구성원 소속 직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대표자가 행하고,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대표자에게 납부한다.

제 7 조(기타 관련 보험) 건설공사보험, 화재보험 등은 본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8 조(제 3 자의 사고) 본 공사(하자보수공사 포함) 중 제 3 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와 관련한 제반 비용 및 민, 형사상 책임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9 조(본 공사 준공 후의 산재처리) 본 공사 준공 후에도 종결되지 않은 산업재해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 담당 구성원이 전담하여 처리하고 관련 제반 비용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10 조(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산재처리) 본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산재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기타) 안전, 환경, 노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인사, 급여 및 취업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7 조에 의거하여 현장에 파견된 종사원에 대한 인사, 급여 및 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인원구성) 현장의 종사원은 구성원이 파견한 구성원 소속 직원(PJT 전문직 포함), 대표자(현장소장 포함)가 채용하는 직원(PJT 일반직 포함)으로 구성된다.

제 3 조(파견자 수급요건) 현장의 조직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조(현장소장의 인사조치 기준) 현장소장은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1. 병가 결근 1 개월, 사고 결근 1 주간 이상이 되는 자
- 2. 해당 구성원의 사정으로 2 주간 이상 작업현장에 근무할 수 없는 자
- 3. 무단 결근이 잦은 자
- 4.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 5. 공동수급체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 자
- 6. 현장 내의 통제를 이탈하거나 어지럽히는 자
- 7. 대표자가 시행하는 산업사고 및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

제 5 조(현장소장의 인사관리 책임) 현장소장은 종사원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다음의 책임을 진다.

- 1. 종사원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건강유지를 충분히 배려한다.
- 2. 종사원의 근태, 시간 외 근무시간의 수, 일.숙직의 수, 기타 구성원의 인사고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한다.
- 3. 구성원으로부터 상벌 또는 근무성적 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직하고 공정한 의견을 통보한다.

제 6 조(급여지급의 원칙) 공사 현장에 파견된 종사원의 급여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구성원이 자신의 내부규정에 따라 그 소속 종사원 개인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 2. 월 중에 공동수급체에 임용, 전출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 3. 구성원 소속 직원 외에 대표자(현장소장 포함)가 채용하는 종사원의 급여 책정은 대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직무의 직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또한 모든 비용은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7 조(사회보장 수혜제도 시행기준)

① 구성원이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무는 해당 구성원이 처리하고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② 구성원 소속 직원 외의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출장여비 지급) 종사원의 출장여비는 해당 구성원의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 후 공사원가에 계상한다.

제 9 조(산재 시의 급여) 해당 소속 구성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10 조(복무준수사항) 종사원은 이 규정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제 규칙 및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인격을 존중한다.

제 11 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현장소장은 업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시간 외 또는 휴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명을 받은 종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휴가) 종사원은 본인 소속 구성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현장소장에게 문서로 휴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결근 등)

① 종사원은 결근,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현장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사로운 병으로 연속하여 7 일 이상 결근이 예상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지각, 조퇴, 출장, 외출 등) 지각, 조퇴, 출장, 사사로운 외출 기타 근무시간 중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소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일직, 숙직) 종사원은 일직 및 숙직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현장관리 및 순찰은 물론 당직자로서 필요한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16 조(우선순위) 본 공사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그가 소속된 구성원의 내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가 소속된 구성원의 내부규정에 의한다. 첨 부:[별표1] 공동 수급체 기구표.

[별표 2] 시공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별표 3] 구성원간 은행 거래 구좌표.

[별표 4] 산재처리순번표.

[별표 5] 하도급계약 동의서.

[별표 6] 공동수급체 지위 탈퇴 및 시공권 포기각서.

[별표 7] 일자등 보충권 수여증서.

[별표 8] 채권양도 계약서.

[별표 9] 채권양도 통지서

[별표 10] 양도금액등 보충권 및 채권양도 통지권한 수여증서. 마침

공동 수급체 기구표



[별표 2]

시공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회 사 명	운 영 위 원		
	직 위	성 명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신 점 시	
㈜일주종합건설			

[별표 3]

구성원간 은행거래 계좌

회 사 명	은 행 명	지 점	계 좌 번 호	비고
㈜포스코이앤씨	우리은행	포스코타워	26914020192435	예금주는 회사명과 동일
㈜일주종합건설				

[별표 4]

1. 산재처리 순번표

순 번	산자	비고	
	회 사 명	안전관리책임자	-, -
1	㈜포스코이앤씨		
2	㈜일주종합건설		
3	㈜포스코이앤씨		
4	㈜포스코이앤씨		
5	㈜포스코이앤씨		
6	㈜일주종합건설		
7	㈜포스코이앤씨		
8	㈜포스코이앤씨		
9	㈜포스코이앤씨		
10	㈜일주종합건설		

※ 벌점 부과는 노동부 고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에 따라 각 구성원의 지분율에 의해 처리된다.

- 11 번째부터는 순번 싸이클 대로 처리 한다. (사망재해와 일반재해 구분 없이 순번대로 처리함)

2. 산재처리 대장

산재발생일	순 번	처리회사명	산재내용	산재처리완료일

하도급계약 동의서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공사명 : 평택고덕신도시

하도급공사명 :

하도급업체명 :

주소 :

계약금액:

계약기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에게 계약(변경계약)체결 및 해지(해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인)

공동수급체 지위 탈퇴 및 시공권 등 포기각서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등 공동수급체 잔여 구성원

당사가 귀사 등과 함께 2024 년 12 월 10 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평택신도시 광역 1B 도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2025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 11 조, 제 12 조에서 정한 사유가 년 월 일 당사에게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당사는 더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본 공사 수행을 할 수 없기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일체 및 당사 출자비율에 따른 시공권을 포기합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미납한 공사원가 등 각종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당사의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기성금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게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인)

일자 등 보충권 수여증서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등 공동수급체 잔여 구성원

당사가 귀 사 등과 함께 2024년 1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도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년 월 일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제출한 "공동수급체 지위 탈퇴 및 시공권 포기각서"의 공란(백지)으로 된 일자를 위 각서에서 정한 지위탈퇴 및 시공권 포기사유의 발생일자로 보충, 기재할 권한 및 기타 공란에 해당 사항을 보충, 기재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인)

채권양도 계약서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하 '갑')과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이하 '을')는 갑과을이 2024년 1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있는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갑은 갑이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갑이 본 채권양도 계약일까지 이행한 공사의 대가로서 갑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

금 원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인)

양수인: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 (인)

[별표 9]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양도인 :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양수인 :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양도채권의 표시 :

양도인과 양수인이 2024 년 12 월 10 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B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발주자인 귀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양도인이 본 채권양도 계약일까지 이행한 공사의 대가로서 양도인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 중

금 원정

양도인은 년 월 일자로 위 표시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귀 사는 공사대금 지급시 위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도인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 (인)

ροsco 포스코이앤씨

39 / 40

양도금액 등 보충권 및 채권양도 통지권한 수여증서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당사가 귀사와 함께 2024 년 12 월 10 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평택고덕신도시 광역 18 도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2025 년 4 월 일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공란(백지)을, 위 기본협정서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사유가 실제 발생한 때에, 양도금액은 그 사유 발생 당시까지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양도일자 및 통지일자는 그 사유 발생일자로 각각 보충, 기재할 권한과 기타 공란에 해당 사항을 보충, 기재할 권한 및 발주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채경석(인)